

#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48호 2009. 9. 29(화)

선	기 관 의 장
람	

## 포 향 시

- 시장지시사항..... 2
- ◀ 규 칙 ▶
- 포항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제521호) ..... 5
- 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제522호) ..... 24
- ◀ 입법예고 ▶
-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09-1008호) ..... 33
-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09-1015호) ..... 38
- ◀ 공 고 ▶
-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제2009-1005호) ..... 53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 73

회									
람									

## 시장 지시사항

- 2009. 9. 28(월) 간부회의 -

### 포 향 시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9.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지 전구간 녹화추진(강조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지 도로 녹화사업을 추진하며 모든 옹벽에는 담쟁이 등굴 등을 조성하여 전구간을 푸르게 가꾸기 바라며,</li> <li>- 도로 중앙에 불필요하게 설치된 규제봉은 조속히 화단 등을 조성하여 정비하기 바람.</li> </ul> </li> </ul>	<p>전 부 서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 설 과)</p>
<p>'09-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 아이디어 직원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된 많은 아이디어는 예산을 반영하고 실무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li> <li>- 직원 교육시 아이디어 제안자가 내용을 발표하고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이 직접 평가하여 우수사항에 대해 시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li> </ul> </li> </ul>	<p>전략경영팀 (자치행정과)</p>
<p>'09-1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절연휴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배려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석을 맞아 전시민이 불우이웃들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여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li> <li>- 특히,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이 명절 연휴기간동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락 배달 등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하기 바람.</li> </ul> </li> </ul>	<p>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p>
<p>'09-1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큐슈 에코도시 성공사례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녹색성장 도시 건설을 위하여 기타큐슈시의 에코도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바라며,</li> <li>- 전직원 해외 선진도시 연수계획에 의한 일본 연수를 활용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li> </ul> </li> <li>○ 송도 해안도로 주변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 추진</li> </ul>	<p>환경위생과 (일본T/F팀)</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 국지도(20호)선 완공이후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사전 지구지정 등 도시개발계획 추진으로 품격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기 바라며,</li> <li>- 송도 주변정비와 관련하여 송도초등학교와 기상대의 이전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 하기 바람.</li> </ul>	도시계획과 (건 설 과) (주 택 과)
'09-132	<p>○ 신설도로의 고속도로 연계 이정표 확대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 30일 동시개통 예정인 도로를 사전 점검한 결과 고속도로를 연계하는 이정표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음</li> <li>-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확대설치토록 하고 추석연휴를 맞아 귀성객을 위한 임시시설을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li> </ul>	건 설 과

**부시장 지시사항**

- 2009. 9. 28(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9. 28)	<p>○ 공직기강확립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비리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여 책임있는 비리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li> <li>- 지방세 과오납 착복사례 발생에 따른 감사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li> <li>- 특히 농어민, 사회단체, 산하기관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상자 선정부터 신중을 기하고 수시 점검과 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람.</li> </ul>	전 부 서 (감사담당관)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9.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석연휴 시정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휴기간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시정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li> <li>- 3일동안 홍보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30일 오전까지 각 부서별 최대한 많이 제출 해주기 바람.</li> </ul> </li>   <li>○ 추석연휴 쓰레기대책 추진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석연휴 쉬지도 못하고 노고가 많은 환경미화원을 잘 격려해 주기 바라며,</li> <li>- 연휴기간동안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방치 되는 쓰레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li> </ul> </li>   <li>○ 공원묘지 등의 교통혼잡 대책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묘지 등에 많은 성묘객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 되고 있음.</li> <li>- 경찰과 사전 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성묘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li> </ul> </li>   <li>○ 상옥 슬로우시티 경상북도 수목원과 연계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옥 슬로우시티는 시민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로서 인근 경상북도 수목원과 연계하면 좋을 것이며,</li> <li>- 경상북도에서 수목원의 확장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li> </ul> </li> </ul>	<p>전 부 서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남, 북구청)</p> <p>전 부 서 (청 소 과) (남, 북구청)</p> <p>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남, 북구청)</p> <p>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도시녹지과)</p>

# 규 칙

포항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9월 29일

포항시 규칙 제 521 호

## 포항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포항시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포항시 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 제명 띄어쓰기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를 하지 아니한 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규칙 제명 띄어쓰기

[별표 1]

국	부서명	규 칙 명	원 행	개 정	비고
	공보담당관실	포항시시보규칙	포항시시보규칙	포항시 시보 규칙	
	감사담당관실	포항시 자체감사규칙	포항시 자체감사규칙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감사담당관실	포항시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포항시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포항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포항시공인조례시행규칙	포항시공인조례시행규칙	포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포항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포항시사무인계인수규칙	포항시사무인계인수규칙	포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포항시모범공무원포상및항토포상운영규칙	포항시모범공무원포상및항토포상운영규칙	포항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항토포상 운영 규칙	
		포항시공무원대상운영규칙	포항시공무원대상운영규칙	포항시 공무원 대상 운영 규칙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국	부서명	규 칙 명	원 행	개 정	비고	
자 치 행정국 자 치 행정국		포항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 포항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시행규칙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포항시 민원사무장구 전결처리 규칙 포항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 자부여 업무처리 규칙	포항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 포항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시행규칙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포항시 민원사무장구 전결처리 규칙 포항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 자부여 업무처리 규칙	포항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 포항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포항시 민원사무장구 전결처리 규칙 포항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 자부여 업무처리 규칙		
	기 획 예산과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새마을 봉사과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시행규칙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시행규칙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등 설치 운영 조례시행규칙		

국	부서명	규 칙 명	원 행	개 정	비고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제산업국	포항시탈세정보교부금지규칙	포항시탈세정보교부금지규칙	포항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주민생활지원과	주생지원과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포항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여가족과	포항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자과징금감경규칙	포항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자과징금감경규칙	포항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 감경 규칙	
		포항시환경미화원복무규칙	포항시환경미화원복무규칙	포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포항시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자과징금감경규칙	포항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자과징금감경규칙	포항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 감경 규칙	



구	부서명	규 칙 명	원 행	개 정	비고
건설 도시국	건설과	포항시도로무단정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포항시도로무단정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포항시 도로무단 정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도시계획과	포항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포항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도시개발과	포항시환지정산금취급규칙 포항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특별처분지매각규칙	포항시환지정산금취급규칙 포항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특별처분지매각규칙	포항시 환지정산금 취급 규칙 포항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매각 규칙	
재 인 전 과	재인전과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교통행정과	포항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포항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보건소	보건소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이용조례시행규칙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이용조례시행규칙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시행규칙	
	보건소	포항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포항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규칙	
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포항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포항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사업소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구	부서명	규 칙 명	원 행	개 정	비고
사업소	농산물 도매시 장관리 사무소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 규칙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여성문 화회관	포항시여성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시행규칙	포항시여성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시행규칙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읍·면·동	포항시동정협의회운영규칙 포항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의 시행에관한규칙	포항시동정협의회운영규칙 포항시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 의시행에관한규칙	포항시 동정협의회 운영 규칙 포항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등의 시행일에 관한 규칙	
구, 읍·면·동		포항시리장임명예관한규칙	포항시리장임명예관한규칙	포항시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리·통·반	포항시통반운영규칙	포항시통반운영규칙	포항시 통·반 운영 규칙	
		포항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포항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 변경 등 (규칙)

[별표 2]

국	부서명	규칙명	조·항·호	원행	개정	비고
	공보담당관실	포항시시보규칙	제6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감사담당관실	포항시자체감사규칙 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중 제5조제1항제2호 중	감사원사무처리규칙 “민법”	「감사원사무처리규칙」 「민법」	
		포항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4조제2항 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1항 중 제1조 본문 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법령명 낱표(「」)표시 및 제명 띄어쓰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포항시사무인계인수규칙	제17조제1호 중 제1조 본문 중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내지제36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국	부서명	규칙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규칙	제1조 본문 중 제2조제1항 중 제3조제2항 중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법률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포항시모범공무원포상및향토개발상운영규칙	제1조 본문 중 제2조제3항 중	포항시포상조례 포항시포상조례, 모범공무원규정	「포항시 포상 조례」 「포항시 포상 조례」, 「모범공무원 규정」	명 낱표(「」)표시및 제명 띄어쓰기	
		포항시공무원대상운영규칙	제1조 본문 중 제6조 제1항 중	포항시포상조례 지방공무원임용령	「포항시 포상 조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포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포항시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규칙	제1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제7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		
			제2조 본문 중	수당규정 제18조제1항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		

국	부서명	규칙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포항시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제6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법령명 낫표(「」)표시 및 제명 띄어쓰기
			제7조제2항 중	수당규정 제18조제4항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	
			제8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제12조 본문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14조의3제1항 중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의3제2항 중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제2항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본문 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자장학규정시행규칙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5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1조 본문 중	포항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 정시행규칙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국	부서명	규칙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제4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법령명 낫표(「」)표시 및 제명 되어쓰기
			제9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제6조제1항제2호중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제8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16조 및 제95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104조제1항	
			제1조 본문 중	민법부칙 제3조제4항	「민법」 부칙 제3조제4항	
	기획예산과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운영에관한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0조		

국	부서명	규칙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포항시 주요업무 및 시민약속 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 본문 중	「포항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본문 중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조례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새마을 봉사과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2조 본문 중	「포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과	포항시 민속 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 민속 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포항시 민속 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 본문 중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체육지원과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본문 중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	부서명	규칙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자치행정국 체육지원과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법령명 낱표(「」)표시 및 제명 띄어쓰기
			제13조제2항제1호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본문 중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6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제산업국	기업노동과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 조례	「포항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2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포항시 시세부과징수 규칙	제62조제2호 중	파산법	「파산법」	
			제82조제7호 중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	부서명	규칙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경제산업국		포항시탈세정보교부금지금규칙	제1조 본문 중	지방세법 제67조제2항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지방세법」 제84조제2항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재정관리과		제5조 본문 중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제1항 중	지방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9조 본문 중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중	은행법	은행법	「은행법」	
		농축산과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법령명 낱표(「」)표시 및 제명 띄어쓰기
주민생활지원국	해양수산과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민생활지원과		제1조 본문 중	포항시저소득주거민주거및생활환경개선기금운용조례	「포항시 저소득주거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1조 본문 중	포항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포항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	「포항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여성가족과	포항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금규칙	제1조 본문 중	청소년보호법 제44조	「청소년 보호법」		

국	부서명	규칙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주민생활 지원국	여성가족과	포항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자과징금강경규칙	제1 조 본문 중  제2조 본문 중  제3조제4호 중  제3조제5호 중  제3조제6호 중  제3조제7호 중  제3조제8호 중  제3조제12호 중  제3조제1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행정절차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자연재해대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및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40조제3항  「행정절차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자연재해대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과	포항시 환경미화원복무규칙	제4조제4호 중  제20조제6호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	부서명	규칙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주민생활 지원국	청소과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 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설치및운용조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설과	포항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 한과태로 부과징수조례시행 규칙	제1조 본문 중  제10조 본문 중	포항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 태로부과징수조례  포항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 태로부과징수조례	「포항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 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  「포항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 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	
건설도시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포항시도시계획조례	제1조 본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포항시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법령명 낫표(「」)표시 및 제명 띄어쓰기
		포항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항 중	건축법	「건축법」	
	도시계획과		제4조제7항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먹는 물 관리법」, 「하수도법」 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과	제4조제9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제4조제9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동법시행령 별표 8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조제9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8호		

국	부서명	규칙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포항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제9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법령명 낫표(「」)표시 및 제명 띄어쓰기
			제4조제9항제5호 중	동법시행령 별표 1	동법 시행령 별표 13	
			제5조제4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제13조, 하수도법제15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수도법」 제18조, 「하수도법」 제12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건축법」	
			제1조 본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52조제5항	
			제2조 본문 중	환지청산금취급규칙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포항시환지청산금취급규칙	제5조제1항 중	법 제127조제4항	법 제41조제6항	
			제7조제1항 중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8조제3항 중	법 제127조제4항	법 제41조제6항	

국	부서명	규칙명	조항·호	현행·호	개정	비고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법령명 낫표(「」)표시 및 제명 띄어쓰기
			제2조 본문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법」	
	교통행정과	포항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제1조 본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조제1항 중 제6조제6항 중	규칙 제17조제1항및제2항 건설기계관리법,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보건소	보건소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9조제2항 중	규칙 제17조제9항	규칙 제19조제8항	
			제11조 본문 중	규칙 제12조제1항	규칙 제14조제1항	
보건소	보건소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이용조례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이용조례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포항시시세조례	「포항시 시세 조례」	

국	부서명	규칙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보건소	보건소	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 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1조 본문 중 제5조 본문 중	국민건강증진법 행정절차법	「국민건강증진법」 「행정절차법」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 면기준(제16조 제4항)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 면기준(제15조 제4항)	
사업소	건설환경 사업소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0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포항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수도급수조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법령명 낫표(「」)표시 및 제명 띄어쓰기
	상수도 사업소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 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포항시 상수도원인지부담금 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제4조제1항 중	포항시 상수도원인지부담금에 관한 조례 포항시수도급수조례	「포항시 상수도원인지부담금에 관한 조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4조제5항 중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 본문 중	포항시수도급수조례 및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구	부서명	구칙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사업소	문화예술 회관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 례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호 중	교육인적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 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 리조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구 읍· 면· 동	여성문화 회관	포항시여성문화회관운영및 사용조례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여성문화회관운영및사용 조례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법령명 낱표(「」)표시 및 제명 띄어쓰기
		포항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등의시행일에 관한규칙	본문 중	포항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징수 조례,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및 포 항시 통반 설치 조례	「포항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징수 조례」, 「포항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통반 설치 조례」	
	읍·면· 동	포항시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제2 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리 통 반	리 통 반	포항시통반운영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통반설치조례	「포항시 통반 설치 조례」	
		포항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 금조례시행규칙	제1조 본문 중	포항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금조 례	「포항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 급 조례」	

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9월 29일

포항시 규칙 제 522 호

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영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은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해당 심의회만 참석한다.

- 1. 변호사
- 2. 대학교수
- 3. 시민단체 대표 등

③ 위촉직 위원은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가 접수 되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 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감사담당관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나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없는 경우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담당관, 팀·과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 회의일 3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 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③ 안건을 심의·의결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2조(조례안 검토)** ①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은 관련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안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내용 중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일괄 상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심의회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사무관리규정」 제10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심의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였거나 심의할 의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의안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표지)

○○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번호	제 호
의결(보고) 20년월일	200 . . . .  제○○○회

심  
의  
의  
결  
  
사  
향

자치법규 제명

제 출 자	○○○부서장 ○○○
제출년월일	. . .

법제심사( ) 심사필

(내용)

**자치법규 제명**

- 1. 심의주문
- 2. 제·개정이유(서술식)
- 3. 주요내용(서술식)
  - 가.
  - 나.
- 4 제(개)정조례안 : 별첨
- 5 관련법령 발췌서 : 별첨
- 6. 관련부서 의견
- 7. 예산현황
- 8. 입법예고결과
  - 공청회 결과 등
- 9. 사전협의(승인)사항
- 10. 그 밖에 참고사항
  - 가. 표준안 공문
  - 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 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 라. 현행 조례 전문 등
  -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는 일부개정으로 한정함)

【별지 제2호서식】

제○회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

안 건							
원 안	주 문						
	요 지						
수 정	주 문						
	요 지						
<p>위와 같이 의결한다.</p> <p>2009. . . .</p> <p>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p>							
구 분	성 명	심 의 (가,부)	서 명	구 분	성 명	심 의 (가,부)	서 명
의 장				부의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

【별지 제3호서식】

제○○회 ○○시(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일 시 : 20 . . . . .
- 장 소 :
- 참 석 : 명(불참 : 명)

구 분	내 용



【별지 제5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포항시 ○○○○ 조례안				
소 관 부 서	○○○○실·과·소	확인자	담당과장 성명	○○○ (인)	
			담당 성명	○○○ (인)	
검 토 사 항 (유·무란에 ○표)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유	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유	무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유	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			유	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	무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자치법규안의 조문	실·과·소 검토안의 조문		사유 및 의견		
<p>[참고] 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 이라고 기재한다.</p> <p>2.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p> <p>3. 확인자란에는 실·과·소장 및 소관담당(팀장)의 실인을 찍는다.</p>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09 - 1008호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9월 23일

##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시민권익이 침해되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 처리가 어려운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에 고충처리 기능을 보강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 2. 주요 개정내용

- 시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위원회 기능 보강(안 제2조)
  - ▶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추가
- 내부 위원은 임명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안 제3조)
  - ▶ 시에서는 본부·국·소장, 감사담당관, 구에서는 각 과장
- 간사 및 안건의 상정자를 직제규칙에 맞게 조정(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을 새마을봉사과장으로 변경
- 외부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규정 조정(안 제12조)
  - ▶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3.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새마을봉사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전화 : 054-270-2122, 팩스 : 054-270-5998, E-mail : chy1210@ipohang.org)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부**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을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 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 를 “문제점, 현행 제도 하에서 처리가 어려운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 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복합민원,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1인” 을 “1명” 으로, “20인” 을 “20명” 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에서는 각 본부·국·소장, 감사담

당관으로 구에서는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 을 “새마을봉사과장” 으로 한다.

제12조 중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명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와 구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인·허가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u>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u>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생략)  1~3.(생략)  4. <u>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u>  5~7.(생략)</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u>위원 20인</u> 이내로 한다.  ②(생략)  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u>시에서는 본부장·국장, 감사 담당관, 소장, 구에서는 과장</u>  2. <u>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u></p>	<p><u>제명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u></p> <p>제1조(목적) .....  .....  .....  .....  .....<u>문제점, 현행 제도 하에서 처리가 어려운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u> .....</p> <p>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u>복합민원, 고충민원</u> .....</p> <p>제3조(구성) ① ..... 1명.....  ..... 1명을 ..... 20명 .....</p> <p>②(현행과 같음)  ③ <u>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에서는 각 본부·국·소장, 감사담당관으로 구에서는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구청장이 위촉한다.</u></p> <p>1. <u>삭제</u>  2. <u>삭제</u></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간사) ①(생략)</p> <p>② 간사는 시에서는 <u>자치행정과장</u>, 민원주관 담당관·과장이 되고, 구에서는 민원행정업무담당 주사·주관부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p> <p>③(생략)</p>	<p>제6조(간사) ①(현행과 같음)</p> <p>② .....<u>새마을봉사과장</u>.....</p> <p>.....</p> <p>.....</p> <p>.....</p> <p>③(현행과 같음)</p>
<p>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생략)</p> <p>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u>자치행정과장</u>이 민원서류를 접수후 8근무시간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p>	<p>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현행과 같음)</p> <p>② .....<u>새마을봉사과장</u>.....</p> <p>.....</p>
<p>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 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포항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u>”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외부위원 수당) .....</p> <p>.....</p> <p>..... “<u>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p> <p>.....</p>

포항시 공고 제2009 - 1015호

포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 9. 29.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03.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를 도입·추진

2. 주요내용

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완화 (안 제10조의2 제1항)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중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 또는 제곱미터당 1만원의 비율 중 적은금액으로 안전관리 예치금을 완화

나. 가설건축물 축조제한 유예 (안 제11조 제3항)

- 공장건축물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한시적으로 허용  
(2009.9.개정일~2011.6.30까지 축조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다.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완화 (안 제15조 제1항)

-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완화
  - 관광지, 골프장 등 기준에 조정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적용 제외

라.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안 제28조 제5항)

-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성 이벤트를 허용

마. 대지안의 공지확보 의무 완화 (안 제28조의2)

- 공장 또는 물류시설 건축 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한시적 1/2로 완화  
(2009.9.개정일~2011.6.30까지 착공신고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략)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9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 ③ (생략)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⑤ (생략)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0.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건축과 건축담당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전화 270-3591, FAX 270-3580, E-mail : jh3593@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7인이내의” 를 “7명 이내의” 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급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곱미터당 1만원의 비율 또는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 중 적은 금액으로 예치토록 한다.

제11조제3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를 “영 제15조제5항 제14호에서” 로 한다.

제11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공장건축물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을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허용

제12조제1항 중 “각호의 1과” 를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월이하” 를 “6개월 이하” 로,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6월이상의” 를 “6개월 이상의”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각호의 1에서”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한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공공용시설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제1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에 조정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제17조제1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3이상의” 를 “셋 이상의” 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각호의 1에서” 를 “각 호에서” 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는 인접하는 둘 이상의 건축물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에 한 한다.

제26조제1항 중 “2이상의” 를 “둘 이상의” 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각호의 1에서” 를 “각 호에서” 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의 1과” 를 “각 호와” 로 한다.

제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성 이벤트를 열거나 판촉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3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9월 개정일 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34조제1항 중 “약간 인” 을 “약간 명” 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각 1인” 을 “각 1명” 으로 한다.

제39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b>적용의 완화 요청서</b>		허가번호(년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 □□□□□□	
신 청 인	※ 해당 항목에 ㄱ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건축주 <input type="checkbox"/> 설계자 <input type="checkbox"/> 시공자 <input type="checkbox"/> 공사감리자		
건 축 주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사무소 명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	
시 공 자	성 명		면 허 번 호
	회 사 명		면 허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완화 받고자 하는 규정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도시미관이나 주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포항시 건축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포 항 시 장 귀하</b>			

210mm × 297mm(백상지 80g/m<sup>2</su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b></p> <p>①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u>당해</u>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p> <p>4 ~ 5 (생략)</p> <p>② (생략)</p> <p><b>제5조(설치 및 기능) ①~② (생략)</b></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시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4 (생략)</p> <p>④ (생략)</p> <p><b>제6조(구성) ① ~ ③ (생략)</b></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p>	<p><b>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b></p> <p>① ----- -----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 ----- <u>해당</u> ----- -----</p> <p>4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5조(설치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b></p> <p>③ -----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b></p> <p>④ ----- -----,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⑤ (생 략)

제8조(소위원회) ① (생 략)

1.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 선하고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시의원 2명이상을 위원으로 포함 하여야 한다.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에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2, 시 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대상건축물은 연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 곱미터당 1만원의 비율로 예치토록 한 다. 다만,공장은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제11조(가설건축물) ①~② (생 략)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신고용 가설건축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10 (생략)

<신 설>

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 라 한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  
----7명 이내의 -----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곱미 터당 1만원의 비율 또는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 중 적은 금액으로 예치 토록 한다.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설건축물)①~②(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  
-----  
-----

1 ~10 (현행과 같음)

11. 공장건축물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 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컨테 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 설건축물을 2011년 6월 30일 까지 한시적 허용

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  
-----

다)를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

1 ~ 4 (생략)

②업무대행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업무정지처분이 없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통산하여 6월이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된 업무대행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건축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로서의 재선임은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통산하여 6월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생략)

③ ~ ⑤ (생략)

제14조(건축지도원)①영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서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대지안의 조정) ① (생략)

1 ~ 3 (생략)

-----  
-----  
----- 각 호와 같다.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6개월 이하에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 -----  
-- 6개월 이상의 -----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건축지도원)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대지안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공공용시설은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생 략)

1 ~ 7 (생 략)

<신 설>

**제1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행로는 시장 또는 건축허가 조사업무 대행자의 확인이 있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 2 (생 략)

**제1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4.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공공용시설은 제외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제17조(도로의 지정)**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2 (현행과 같음)

**제1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  
--- 셋 이상의 -----  
-----  
-----  
-----  
-----  
-----  
-----  
-----  
-----  
-----

**제2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 5 (생략)

제25조(맞벽건축) (생략)

- 1. (생략)
- 2. 맞벽건축물의 동수는 인접하는 2개 동으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에 한한다

제26조(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바다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가장 넓은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 1 ~ 3 (생략)
- ② ~ ③ (생략)

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생략)

② 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상으로 한다.

- 1 ~ 3 (생략)
- ③ (생략)
- ④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 2 (생략)

-----  
-----  
----- 각 호에서 -----  
-----

1 ~ 5 (현행과 같음)

제25조(맞벽건축)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맞벽건축물의 수는 인접하는 둘 이상의 건축물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에 한한다

제26조(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 둘 이상의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현행과 같음)

② -----  
-----  
----- 각 호에서 -----

- 1 ~ 3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④ -----
- 각 호와 -----
-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 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제34조(전문위원)** ① 각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35조(간사 및 서기)**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내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생 략)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의하여 공개 공지 등에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성 이벤트를 열거나 관측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 -----  
-----  
-----  
-----  
-----  
-----  
-----  
-----  
-----  
-----

다만, 별표 3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9월 개정입 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분의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34조(전문위원)** ① -----  
-----  
-----약간 명을-----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간사 및 서기)** ① -----  
-----각 1-----  
명-----  
-----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서

신청인	사무소명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등록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사 무 소 소 재 지	(사무실 전화 : ) (F A X : )		
	주 소	(자택전화 : )		

대상지역

※ 해당 지역에 ㄱ를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남구  북구

「포항시 건축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업무 대행건축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서

신청인	사무소명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등록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사 무 소 소 재 지	(사무실 전화 : ) (F A X : )		
	주 소	(자택전화 : )		

대상지역

※ 해당 지역에 ㄱ를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남구  북구

「포항시 건축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업무 대행건축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09-1005호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항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 9. 25.

1.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

가. 위탁사무

-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전반(어린이집 포함)
- 2)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전반
- 3) 기타 종합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나. 위치 및 시설

-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
  - 시설규모

층 별	연면적(㎡)	시 설 용 도
총연면적	1,537.41	대지면적 2,145㎡ 건축면적 1,537.41㎡
지하1층	758.08	보일러실
1층	418.51	사무실, 관장실, 상담실, 노인정, 어린이집
2층	360.82	급식소, 강당, 건강센터, 프로그램실, 홈헬프센터, 도서실, 지역아동센터, 자활사업실

## 2) 포항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11

- 시설규모

층 별	연면적(㎡)	시 설 용 도
총연면적	1,246.75	대지면적 1,485㎡ 건축면적 1,246.75㎡
1층	422.51	사무실, 관장실, 조리실, 재가아동센터, 창고, 화장실, 세탁실, 상담실, 꿈자람터, 복도 등
2층	410.47	웰빙교실, 강당, 도레미음악교실, 자료실, 회의실, 화장실, 복도 등
3층	413.77	미술교실, 아동가족상담센터, 생각이크는교실, 건강교실, 화장실, 복도 등

## 2. 위탁운영기간 :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 위탁일로부터 창포종합사회복지관 3년 2개월(' 09.10.31~' 12.12.31)

나. 위탁일로부터 포항종합사회복지관 3년 1개월(' 09.11.15~' 12.12.31)

## 3.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무분야에 대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법인

※ 단 법인의 목적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하며, 창포종합사회 복지관 또는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중 선택을 하여 신청하여야 함

## 4. 위탁조건

가. 사회복지사업법,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법령, 지침의 준수

나.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및 위·수탁협약 사항의 준수

다.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의 준수

## 5. 응모제외대상

가. 최근 3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이사장 또는 시설장(내정자)이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나.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 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다.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경상북도 및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 된 운영법인.

라. 법인의 재정능력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어려운 운영법인.

## 6.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09. 9. 25 ~ 10. 9(15일)

나. 접수기간 : 2009. 10. 12 ~ 10. 13(2일)

\* 신청서는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

다. 접수장소 : 포항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라. 접수방법 : 신청자가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제출

**7. 제출서류(별첨)**

- 가.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서.
- 나. 법인의 일반현황(법인정관, 법인조직, 임원명단, 주요사업,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등)
- 다. 법인의 재산현황(재산총괄, 기본재산, 보통재산, 부채현황, 부동산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예금잔액증명 등)
- 라. 법인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법인운영사회복지 시설현황, 법인결산내역, 법인 연간수입액 등)
- 마. 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서(사업의 비전, 종사자확보 계획, 프로그램운영 계획, 소요예산과 예산조달 방법 등)
- 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정부담계획
- 사. 법인전입금부담 및 고용승계 승낙서(소정양식) 1부
- 아.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 수탁운영신청서 및 부속서류는 11부 제출

**8. 수탁법인 선정방법 및 발표**

- 가.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심사당일 시설장(내정자) 또는 법인에서 지정하는자가 사업설명 및 답변(15분이내)
- 나. 단독 신청시에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되, 심사결과 60점 미만시 재공고
- 다. 심사결과 발표 : 접수자에게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가. 신청서 접수전에 위탁시설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라며, 시설 및 위탁업무에 적합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나. 사업운영계획서에는 사업명, 인력 및 장비운영, 세입·세출예산서 자체부담 확보계획(자체부담 계획이 있을시)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다. 수탁자 선정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되므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음
-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바. 신청서식 등은 포항시청 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054-270-2953)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주인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자	구성원수	계	임원	직원	기타	
주요사업내용						
재 산 총 액 (천원)	기본재산			법인의 연간 수입액		
	계	목적용재산	수익용재산	수 입 액	연평균 운영경비 부담가능액	
위탁대상시설						
수탁목적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9.  
신청법인 소 재 지  
법 인 명  
대 표 자 (인)

※ 첨부서류 :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1. 법인 일반현황(법인정관, 법인조직, 임원명단, 주요사업,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종합사회복지관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등)
2. 법인 재산현황(재산총괄, 기본재산, 보통재산, 부채현황,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예금잔액증명 등)
3. 법인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법인 운영사회복지시설현황, 법인 결산내역, 법인 연간수입액 등)
4. 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서(사업의 비전, 종사자확보 계획, 프로그램운영계획 소요예산과 예산조달 방법 등)
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정부담계획
6. 법인전입금부담 및 고용승계 승낙서(소정양식) 1부
7.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포항시장 귀하**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I. 운영주체의 공신력**

1. 수탁법인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1) 신청 목적

2) 기본 현황

법인명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유형	전국법인( ), 지역법인( )
			법인기능	지원법인( ), 시설설치운영법인( )
설립허가일			설립등기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리관청	
설립근거 및 목적	※ 개조식으로 작성			
주요연혁	※ 필요시 별지 작성			
주요사업				
법인시설	※ 직영/수탁시설 구분 작성			

※ 첨부서류

- 법인 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3) 임 원 현 황 :    명 (이사    , 감사    )

(1) 이사현황

기본인적사항						임 기 (최초임면일)	소지자격 (사회복지 관련)	특수관계 여 부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본 적 (호주)	직 위 (직 책)	주요경력				

※ 첨부서류

- 이사회구성 근거지침

(2) 감사현황

기본인적사항						임 기 (최초임면일)	소지자격 (직무 관련)	특수관계 여 부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본 적 (호주)	직 위 (직 책)	주요경력				

※ 첨부서류

- 임원 이력서 및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소지자격증 사본 등

4) 이사회 활동 실적

(1) 이사회 개최 실적

구분 (정기 또는 임시(수시) 등)	개최일자	참석대상	회의 안건	회의결과	사 업 반영여부	비고

※ 첨부서류 : 이사회 회의록

(2) 이사회 참여 외 기타 활동 사항

대상 (법인, 시설명)	기 간	활동인원 (이사명)	활동내용	비고

5) 법인 및 법인 수탁시설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

(1) 법인 지도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도별	점검 기간	수행 감정 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구분 (회계, 리, 운영프로그램 등)	지 내 적 용	처분사항				재정적	신분상	조치내 용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계	시정	주의	경고				
계												

(2) 수탁시설 지도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도별	점검 기간	수행 감정 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구분 (회계, 리, 운영프로그램 등)	지 내 적 용	처분사항				재정적	신분상	조치내 용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계	시정	주의	경고				
계												

※ 행정적처분 : 시정, 주의, 경고 등  
 재정적처분 : 여입, 보전, 추징, 환불  
 신분상처분 : 주의, 훈계 등

2. 법인의 행정능력

1) 법인의 조직 및 인원

(1) 조직도

(2) 법인예산규모

가. 세 입

[단위:천원]

연도별	계	재산수입	수익사업수	보조금입		차입금	전입금	기타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계								
2006								
2007								
2008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

※ 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2항관련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나. 세 출

[단위:천원]

연도별	계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상환금	기타
계							
2006							
2007							
2008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

※ 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2항관련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 첨부서류 : 법인회계 예·결산서 등

(3) 법인 사무실 현황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가. 소재지 :

나. 면적 :

다. 운영형태 (사무실 운영 방법<산하시설내, 별도시설 등>), 조직, 인력 등

라. 허가사항 :

(4) 법인 직원(전담부서) 현황 : 명

부서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담당업무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특수관계 여부

※ 전담인력 기재

(5) 법인의 보고의무 준수

보고문서명(문서번호)	제출일자	제출처	비 고

※ 관련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업무 지침 등에 근거(분기,반기보 등)하여 제시되는 사항

2)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직영 시설

시설 종류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시설규모 (연면적)	운영 기간	예산규모(천원)							비고 (주요사 업내용)							
					연도별	계	사업 수입	보조금수입		법 인 전입금	차입금		기타						
								보조금	후원금										
					계														
					2006														
					2007														
					2008														

(2) 수탁 시설

시설 종류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시설규모 (연면적)	운영 기간	예산규모(천원)							비고 (주요사 업내용)							
					연도별	계	사업 수입	보조금수입		법 인 전입금	차입금		기타						
								보조금	후원금										
					계														
					2006														
					2007														
					2008														

3. 신청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1) 신청법인의 사회복지사업계획

※ 첨부서류 : 법인 사업계획서 (2006, 2007, 2008년)

2) 신청법인의 사회복지사업계획 이행실적

※ 첨부서류 : 법인 사업 실적보고서[결산서] (2006, 2007, 2008년)

**Ⅱ. 재정능력**

1. 법인의 자산보유 현황

1) 법인의 재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A+B-C)	자 산			부채(C)	비고
		계	부동산(A)	동산(B)		
합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2) 재산 성질별 현황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 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총가액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 고 (용 도)
계								

※ 첨부서류: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 건 물

연번	소재지	지 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 과 표	총가액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 고 (용 도)
계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2) 수익용 기본재산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 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총가액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 고 (용 도)
계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총가액 (천원)	연간수입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연간수입의 수익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 동 산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예치(금융)기관	계좌번호	잔 액	비고
	계			

※ 첨부서류 : 예금 잔액 증명서, 유가증권사본,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등 공공증서로 첨부

(3) 기타재산(보통재산)

- 
- 

(4) 부채현황

- 부채내역

종 목	내 용	금 액	비 고
계			

3) 최근 3년간 ( '06 ~ 08) 법인 연간 수입액

수입내역	금 액	내 용	비 고
계			
재산수입			임대료 수입, 배당 및 이자수입 등
수익사업			판매, 관리, 생산 등
기부후원금			
기 타			

※ 연도별 별도 작성 (비고란에 수입 출처를 기재)

2.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

1) 수탁운영 시설에 대한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

[2006년도]

(단위 : 천원)

수탁 시설	법인전입금 약정액 (A)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이행도(%) (C= (B/A)*100)	비고 (이월액)
		세입	세출(B)							
			계	사무비		재산 구성비	사업비	기타		
인건비	운영비									
계										

[2007년도]

(단위 : 천원)

수탁 시설	법인전입금 약정액 (A)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이행도(%) (C= (B/A)*100)	비고 (이월액)
		세입	세출(B)							
			계	사무비		재산 구성비	사업비	기타		
인건비	운영비									
계										

[2008년도]

(단위 : 천원)

수탁 시설	법인전입금 약정액 (A)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이행도(%) (C= (B/A)*100)	비고 (이월액)
		세입	세출(B)							
			계	사무비		재산 구성비	사업비	기타		
인건비	운영비									
계										

※ 법인전입금은 법인순수부담액(전입금)을 의미



3.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계획

1) 향후 수탁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단위 : 천원, %)

연도별	법인전입금 약정액	법인전입금 사용계획								비고	
		계	사무비				재산조성비		무료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2009											
2010											
2011											
2012											

4. 법인의 회계집행 적절성

1) 법인 대상 회계감사 운영 실태

일 자	구 분	방 법	감 사 자(직함)	지 적 내 용	처 분 결 과	이 행 사 항

※ 구 분 :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  
 ※ 방 법 : 자체감사,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등을 기재

2) 법인 예산 관리

(1) 예 산

연도별	절 차 이 행 현 황				비고
	예산편성지침 마련	이사회회의결	담당기관(시) 제출	공고기간	
2006					
2007					
2008					

(2) 결 산

연도별	절 차 이 행 현 황				비고
	결산서 작성	이사회회의결	담당기관(시) 제출	공고기간	
2006					
2007					
2008					

**Ⅲ. 사업 능력**

1. 법인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1) 신청법인의 수탁시설 운영 및 지원·관리 실태

(1) 사회복지시설 수탁 현황

시설구분	계	종합사회복지관	...		
개 소 수					
시 설 명					

※ 수탁시설 관련 사항은 제출우선순위에 준하여 해당 시설관련 자료를 기재 제출바람

※ 제출 및 작성 대상 우선순위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시설 > 기타 ... (운영시설 종류 및 규모 기준)

(2) 법인의 수탁시설 지원 및 관리

※ 제출우선순위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시설 > 기타 ... (운영시설 종류 및 규모 기준)

가. 시설지원규모

시설명	연도별 지원액 (단위 : 천원)				
	계	2006	2007	2008	비 고

나. 인력 및 장비,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관리

※ 인력 : 직원 능력발전 지원 (교육 등) 또는 후생복지지원(직원포상, 연수 등)

다. 법인의 수탁시설 관리·감독 실적

일자	구 분	감 사 자	지적내용	처분결과	이행사항

※ 구 분 :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

2) 수탁시설(시설명) 운영 실적 [시설이 다수인 경우 개별 시설별로 작성]

(1) 직원현황

(단위:명)

시설명	직 위	정규직					기타인력		
		계	관장	부장	...	기능교사	일용직	...	
	인 원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여부								

(2) 예·결산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세입(예산)						세출(집행)						비고	
	계	보조금	사업수입	후원금	전입금	기타	계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기타
								인건비	운영비		무료	유료		
계														
2006														
2007														
2008														

※ 예·결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3) 시설 주요 사업 현황

※ 자체 특화(우수)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일반사업과 구분 작성

(4) 지역사회 자원 개발 관리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현황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비고
후원자수					
자원봉사자수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연도별	수입내역				지출내역						비고 (공개여부)
	계	지정 (결연) (천원/건)	비지정		계	사무비		재산 조성비	사업비	기타	
			공모 후원 (천원/건)	일반 후원 (천원/건)		인건비	운영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5) 수탁 중인 시설의 평가

※ 수탁 받은 시설 중 보건복지부 및 경상북도 등 행정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들의 최근 3년간의 운영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 (2006 ~ 2008년)

(평가기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내용, 평균 점수, 평균점수(등수) 대비 시설점수(등수) 등 기재)

※ 첨부서류 : 수탁시설 평가 실적 증빙자료 (예: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평가결과 최종 통지서 등)

(6) 운영규정

※ 별도제출 (이사회 통과 관련 회의록 포함)

2. 수탁 신청 종합사회복지관 향후 운영계획

1) 종합복지관 운영 계획서 : [별지 1], [별지 2]

IV. 법인대표·시설장에 대한 심사

1. 법인대표 및 복지관장 인적사항

1) 대 표 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 적)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2) 복지관장(내정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 적)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첨부서류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대표자 및 시설장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인감증명서 등

2. 복지관장(내정자)의 전문성

1) 근무경력

구 분	근무시설명	근무기간	근무경력	연락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				

2) 복지관장 자격증 취득 현황

취득일자	자격증 종류	시행기관	비 고

[별지 1]

2009년 창포·포항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연도별작성)

- 1. 사업명 :
-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사업의 비전, 중장기 계획 포함)
- 3.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 1) 주요사업내용(개조식)
    -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 2)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 향후 3년간(2009 ~ 2012년)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 프로그램 등 작성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 방법(자체부담확보 계획 등)
      - ※ 복지관 5대 사업 구분(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 자활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운영방법, 프로그램 등 작성)
      - ※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서
      - ※ 시정 연계사업 운영계획서 등
- 4. 종합사회복지관 인력 및 장비 운영계획
  - 1) 종합사회복지관 조직 및 인원 구성계획
    - 조 직 도
    - 직원확보계획
    - 직원교육 및 후생지원계획
  - 2)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계획
- 5. 시설운영
  -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3) 재정투자 및 운영계획
  - 4)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구축 방안
- 6. 세입·세출예산서 : 별도작성 (2009~2012년)[별지 3]
  - 세입·세출예산서(종합사회복지관)
- 7. 기타사항

[별지 2]

예시)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세부사업계획서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계 획		(4)사업의내용	(5)기대효과
		목표(건명)	예 산		
예시) 1.가족복지	가. 상담사업	1. 200건		○ 자원봉사자인 전문가 활용 지역, 주민에 대한 가정 법률문제 상담	○ 저소득층 문제와 사전예방도모

- ※ 작성요령 : (1)항은 “가족복지, 재가복지, 지역복지” 등으로 분류
- (2)항은 세부적인 사업명을 기재함
- (3)항중 목표 등은 수혜 연인원을 기준으로 함
- (4)항은 세부사업내용(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 (5)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 별지2와 별지3를 연결하여 작성하되 향후 위탁기간 중 복지관 운영세부계획은 별도작성.

[별지 3]

예시)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 예산서(3년)연도별작성

1. 세입·세출 총괄

(단위:천원)

세입						세출					
항	목	2009년 예산(A)	2010년 예산(B)	증감(B)-(A)		항	목	2009년 예산(A)	2010년 예산(B)	증감(B)-(A)	
				액수	비율(%)					액수	비율(%)

2. 세입내역

(단위:천원)

항	목	2009년 예산(A)	2010년 예산(B)	증감(B)-(A)		2009년도 예산산출내역
				액수	비율(%)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3. 세출내역

(단위:천원)

항	목	2009년 예산(A)	2010년 예산(B)	증감(B)-(A)		2009년도 예산산출내역
				액수	비율(%)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인건비는 직종별로 구체적으로기재

법인전입금부담 및 고용승계 승낙서

상기 법인은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창포동, 대도동 소재)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매년 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당초 약정한 법인전입금 약정금을 분기별로 균등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경우 재정 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복지사업(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법인전입금이외에도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금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법인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함과 아울러 복지관 기존 직원에 대하여 고용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09. . .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성 명 : (인)

포 항 시 장 귀 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09년 9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9. 23.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시행일	9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감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아 (수자원공사) 기계면		
			안계염수			영천염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염수		진전지수		눌대지수	곡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미생물	1.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변성대장균군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 유해영 향우 기물 질	4.납(Pb)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볼소(F)	1.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2	불검출	불검출	0.2	불검출		
	6.비소(As)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세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6가크롬(Cr <sup>6+</sup> )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암모니아성질소(NH <sub>3</sub>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질산성질소(NO <sub>3</sub> -N)	10mg/l이하	0.7	0.9	1.2	0.7	0.3	0.6	0.3	1.8	1.2		
	13.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보론(B)	1.0mg/l이하	0.036	0.019	0.016	0.045	0.044	불검출	0.021	0.053	0.017		
	15.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 유해영 향우 기물 질	16.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득 제한 소득 부 산물	31.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38	0.30	0.74	0.59	0.65	0.21	0.19	0.30	0.95		
	32.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607	0.0345	0.0516	0.0624	0.0508	0.0556	0.0322	0.0112	0.0267		
	33.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3596	0.02804	0.04474	0.03367	0.02360	0.03882	0.01724	0.00213	0.02219		
	34.클로랄하이드레이트 (Chloral hydrate)	0.03mg/l이하	0.01200	0.00578	0.01191	0.01503	0.00862	0.01006	0.00752	0.00197	0.00348		
	35.디브로모아세트니트릴 (Dibromoacetonitrile)	0.1mg/l이하	0.00134	불검출	0.00071	0.00184	0.00227	0.00067	0.00098	0.00166	불검출		
	36.디클로로아세트니트릴 (Dichloroacetonitrile)	0.09mg/l이하	0.00560	0.00374	0.00618	0.00632	0.00439	0.00452	0.00399	0.00088	0.00072		
	37.트리클로로아세트니트릴 (Trichloroacetonitrile)	0.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8.할로아세트메시드 (Haloacetic acids)	0.1mg/l이하	0.0398	0.0268	0.0462	0.0353	0.0229	0.0767	0.0216	0.0033	0.0234		
	39.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837	0.00647	0.00683	0.02022	0.01762	0.01156	0.01034	0.00404	0.00455		
	40.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64	불검출	불검출	0.0085	0.0096	0.0052	0.0046	0.0050	불검출		

구 번	검 사 항 목	정수장,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수자원공사)  신광기계양부
			안계댐수		영천댐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수	눌태지수	곡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41.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102.5	63.6	60.7	116.0	114.7	35.5	67.8	131.6	73.5	
42.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sub>4</sub> )	10mg/ℓ이하	2.96	3.02	2.36	2.90	3.18	2.21	3.09	1.51	4.80	
43.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4.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5.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6.색도(Color)	5도이하	1.0	1.0	1.0	1.0	1.0	1.0	1.0	1.0	불검출	
47.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8.수소이온농도(pH)	5.8-8.5	7.2	7.1	6.8	7.4	7.3	6.5	6.7	6.5	7.0	
49.아연(Zn)	3mg/ℓ이하	0.005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35	0.0076	0.0046	0.5161	불검출	
50.염소이온(Cl <sup>-</sup> )	250mg/ℓ이하	26	11	12	33	30	12	22	20	12	
51.총발견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181.0	91.0	81.0	210.0	210.0	62.0	131.0	226.0	105.0	
52.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3.망간(Mn)	0.3mg/ℓ이하	불검출	0.0129	0.020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88	
54.탁도(Turbidity)	0.5mg/ℓ이하	0.112	0.118	0.120	0.075	0.074	0.062	0.141	0.085	0.116	
55.황산이온(SO <sub>4</sub> <sup>2-</sup> )	200mg/ℓ이하	44	16	14	56	55	9	30	88	17	
56.알루미늄(Al)	0.2mg/ℓ이하	0.027	0.039	불검출	0.037	0.04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42	
<b>관 정</b>		정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정수장 급수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전류염소	4.0mg/ℓ이하	0.51	0.32	0.72	0.58	0.62	0.17	0.15	0.25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ℓ이하	0.007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27	0.0086	0.0077	0.5360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26	10	12	32	30	12	17	19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3mg/ℓ이하	불검출	0.013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b>관 정</b>		수도꼭지 수돗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 수돗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학야정수장 230-4791
-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